#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0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김정호·어기구·허종식

정성호 • 전재수 • 윤후덕

박 정ㆍ이연희ㆍ이수진

이후기 • 최기상 • 김남희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함.

또한, 「도로교통법」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·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보호구역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,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.

특히,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, 국 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 려는 것임(안 제8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4(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)
	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
	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의 안전
	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 조성
	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
	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
	<u>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
	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